## 예 산 총 칙

## 2018년도 추경 3 회

제 1 조 2018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	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	합 계	329,470,000	9,884,100
일반회계		323,400,000	9,702,000
특별회계		6,070,000	182,100
	기타특별회계	6,070,000	182,100
	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	662,200	19,866
	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	79,600	2,388
	주차장사업특별회계	5, 171, 100	155, 133
	지하수 관리 특별회계	157,100	4,713

- 제 2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
- 제 3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"명시이월사업조서"와 같다.
- 제 4조 계속비이월사업은 별첨 "계속비이월사업조서"와 같다.
-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9,401,438천원으로 한다. (일반예비비 2,606,446천원, 재해·재난목적예비비 16,794,992천원)
- 제 6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2,200,000천원으로 한다.
-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- 제 8 조 금회 추경 후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,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예산승인(명시이월 포함)된 것으로 간주 처리한다.